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. 8. 25 선고 2020가단125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

담당변호사 백강수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7. 21.

판 결 선 고 2021. 8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한 2019. 5. 14.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856924) 위 법원으로부터 2016. 12. 14. ‘C는 원고에게 22,341,769원 및 그 중 11,548,071원에 대하여 2016. 7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’는 승소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피고와 소외 C, D는 E(2019. 5. 14. 사망, 이하 ‘망인’이라고 한다)의 자녀들인데,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9. 12. 10.경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C가 자신의 상속분인 1/3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2/3 지분을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다. 피고와 D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2019. 12. 19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/3 지분, D가 1/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(가치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소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/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.

나. 사해행위인지 여부

1) 관련 법리
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

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2)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,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F에 대한 채권최고액 6,000만원의 근저당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, 소외 C는 이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, 즉 ① 망인은 2017. 12. 4.경 기저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인한 사지마비, 실어증, 인지결핍 등의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였는데, 피고가 망인의 간병을 하면서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바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는 2019. 12. 19.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채무자 망인,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된 채권최고액 785,200,000원 근저당권, 같은 채권최고액 332,800,000원 근저당권의 채무명의를 인수하였는바,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위 각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된 점, ③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피고가 인수한 채무액을 월등히 초과하여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채무자인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명중

별지목록

아래 표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14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12. 19. 춘천지방법원 태백동기소 접수 제6514호로 등기한 소유권.

1. 강원도 태백시

대 489㎡

2. 강원도 태백시 호

[도로명주소]

강원도 태백시

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구조 스라브 및 경사트러스

위 아스팔트슬라브갑지붕

1층 근린생활시설 294.54㎡

2층 숙박시설 242.55 ㎡

3층 숙박시설 231.59㎡

지1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10.74㎡, 끝.

